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내 국유재산에 대한 특례 근거 신설〉
■ 박지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701호)

2025. 0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내 국유재산에 대한 특례 근거 신설 (안 별표 제219호)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지혜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1. 22.

다. 회 부 일 : 2025. 1.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환공여구역내의 국유의 일반재산으로서 공공목적인 도로, 주차장, 공원 등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I. 검토의견

1.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내 일반재산에 대한 특례 근거 신설 (안 별표 제219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지방자치단체의 주한미군 반환구역 내 일반재산 사용에 대한 사용료의 감면 및 양여 특례 근거 신설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¹⁾는 이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서만 국유재산특례의 신설 및 운용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다른 법률의 개정”을 통한 [별표]의 개정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 따라서 개별법상의 국유재산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함께 개정하여야 함.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5조 및 제6조²⁾는 국유재산특례의 신설 요건으로 ① 특례목적의 공익에 부합여부, ② 예산지원 등 다른 수단에

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 ①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③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 별표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별표에 따른다.

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5조(국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 국가는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국유재산특례를 신설 또는 변경하거나 운용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국유재산특례의 운용이 국가 전체의 이익에 부합할 것

2. 국유재산특례가 예산 지원, 현물출자나 그 밖의 다른 방법보다 특례 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방법으로서 적절할 것

3. 국유재산특례의 목적, 적용대상 및 적용요건을 법률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할 것

4. 국유재산특례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 운용될 것

제6조(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에 관한 심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국유재산특례를 신설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유재산특례 신설 등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이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비해 효과적인지 여부, ③ 특례요건의 명확성과 구체성, ④ 존속기간의 적절성을 제시하고 있음. 이는 무분별한 특례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절한 관리와 국가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기준에 따라 신설 국유재산특례의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 「국유재산법」 및 시행령은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원칙적으로 5%로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재산의 사용기간은 5년 이내로 정하고 있음. 또한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목적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토지의 경우 5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이하 생략)

제47조(대부료, 계약의 해제 등) ① 일반재산의 대부의 제한, 대부료, 대부료의 감면 및 대부계약의 해제나 해지 등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제2항, 제32조, 제33조, 제34조제1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36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제35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한다.

제46조(대부기간) ①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로 한다.

1. 조립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 20년
2. 대부 받은 자의 비용으로 시설을 보수하는 건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0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토지와 그 정착물: 5년
4. 그 밖의 재산: 1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 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계산할 수 있다. (이하 생략)

개정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미군공여구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_2207700)에 따라 공공목적 사업에 필요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내의 국유 일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양여할 수 있도록 별표에 그 근거를 추가하려는 것임.

참고로 「미군공여구역법」에 따르면 공여구역은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시설 및 구역을 말하며 반환 공여구역이란 공여구역 중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을 말함³⁾.

개정안에 대하여 현행법 제5조 각호에 정한 기준에 따라 특례인정 필요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공원 조성 등 공공목적의 사업을 실시하고자 반환공여구역내 일반재산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안을 통해 대부료의 면제 또는 무상 양여가 가능함.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반환공여구역내 일반재산의 공적 활용을 촉진하여 지자체 주민의 생활 수준 향상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공익성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임.

3)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여구역”이라 함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 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시설 및 구역을 말한다.

3. “반환공여구역”이라 함은 공여구역 중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을 말한다.

둘째, 현행 「미군공여구역법」은 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토지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내 토지 매입이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토지활용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음.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대부 등과 같은 특례를 부여하기보다 현행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내 토지의 매입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셋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_2207700)은 국유재산특례의 대상과 요건을 ‘반환공여구역내의 국유의 일반재산으로서 공공목적인 도로, 주차장, 공원 등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토지’로 한정하고 특례의 수혜자를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바, 국유재산특례 대상과 요건의 구체성은 충족한 것으로 보임.

넷째, 개정안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특례의 존속기한이 설정되어 있는 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 개정 시 존속기한 설정 원칙⁴⁾을 감안하여 존속기한의 적절성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됨⁵⁾.

4) 사용료 감면: 5년 / 양여·장기사용 허가: 8년

5) 참고로, 기획재정부는 「미군공여구역법」에 따르면 이미 예산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중복지원 문제 발생이 가능하고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은 지자체가 매입 및 개발하는 지역으로 실질적으로 지자체 사무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유상사용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한편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_2207700)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할 것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07700호)			
제14조의2(국유지의 무상대여·양여) 국가는 반환공여구역내의 국유의 일반재산으로서 공공목적인 도로, 주차장, 공원 등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별표			
< 신설 >	연번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	특례유형	존속기한
	219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4조의2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30. 12. 31.

문의처
02)6788-5150